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3가단1770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

변론 종결 2024. 10. 10.

판결 선고 2024. 11. 7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가.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40,268,6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나. 피고는 원고에게 40,268,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256923호 양수금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40,268,678원 및 그 중 19,549,668원에 대하여 2023. 1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29.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, D이 2021. 3. 31.경 2021. 3. 29.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와 달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C의 소유였다가, C이 2021. 3. 29.경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백웅철

별지